

「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낮은 차량등록 기준대수를 이용한 신규사업체 등록 과열을 방지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자동차대여사업 차량등록기준 하한대수를 15대에서 30대로 조정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등록 기준대수의 하한을
(현행)15대에서 (개정)30대로 조정하여 신규 사업체 등록의 과열을
방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,

해당 사안은 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의 한계를
벗어나지 않아 적법한 사안이나,
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,
규정 범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